산업통상부고시 제2026 - 126호

통합공고(산업통상부고시 제2026-126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산업통상부장관

통합공고

1. 개정 이유

○ 여러 법령의 제·개정으로 인해 신설·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내용

① 본문 개정 내용

○ 「**화학물질관리법**」 개정사항 반영

- '인체급성유해성물질' 관련 근거규정 수정(법 제20조제1항 → 제2항)

○ 「**디지털의료제품법**」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

○ 「**위생용품관리법**」 개정사항 반영

- 위생용품 수입시 검사 생략 관련 근거규정 수정(법 제8조제3항 → 제4항)

-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위생용품 관련 규정 신설

② 별표 개정 내용

○ 법령 적용 품목 **수출입요령** 개정(별표1, 별표2)

- 「**화학물질관리법**」, 「**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**」 등 17개 법령

○ **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** 별표 개정(별표20)

3. 시행일

① **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**(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.